

중국경제 현안 브리핑

02-32호 / 4월 17일

중국의 서비스산업 개방 현황과 향후 전망

1. 개요

- 최근 국무원발전연구중심(DRC)은 WTO 가입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서비스산업에 대한 점검 보고서를 발표함.
-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정도는 전반적으로 제조업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, 특히 금융, 통신, 보험 분야의 진입 장벽이 높음.
- 금후 WTO 가입의 개방프로그램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부분의 진입장벽이 철폐될 것인바, 중국기업과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됨.

2. 서비스 분야별 개방 현황

- 서비스 분야 중 해운 물류 서비스, 회계 업무, 도소매 유통업 등은 비교적 개방 수준이 높음.
- 도소매 유통업 개방은 1992년부터 북경, 상해 등 도시지역 및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중외 합자 및 합작 기업이 영업을 시작하여 WTO 가입전 이미 상당수의 외자 기업이 진출하였음.

- 그러나 중국측이 반드시 대주주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화학비료, 담배, 원유 등의 유통은 그 진출을 사실한 금지함.
- 해운, 철로, 항공, 육로, 국제화물 운송 대행 등 물류 운송 서비스 분야는 개방이 진척되었으나, 모두 외국인투자 지분 제한이 있음.
- 해운 화물 운송의 경우, 정부간 협의에 따라 독자 선박회사 설립도 가능하지만, 국내외 정기 화물 노선을 운행하는 외국 국적 선박은 중국정부의 허가를 필요로 하며, 합자회사의 외자 비율은 49%를 초과할 수 없음.
- 철로 운송에 진출하는 중국측 파트너와 외국측 파트너는 모두 10년 이상 동 분야에 종사한 기업이어야 하는 등 자격 제한과 중국측 파트너의 지분 비율 51% 이하 불가 등의 제한 규정이 있음.
- 항공 운수 서비스의 외국인 투자 비율은 35%로 제한, 육로 운수의 투자 자격, 비율, 자금사용, 설비 등 엄격한 허가제도를 시행.
- 국제화물 수송 대행 서비스 분야는 1995년부터 중외합자기업 설립을 허가하고 있으나, 외국기업의 경우, 5000만 달러 이상의 수출입 실적, 중국측 최대 지분 유지 등 요구.
- 통신, 은행, 보험 등의 서비스 업종은 다른 서비스 분야보다 외국기업 진출이 더욱 제한적임.
- 중국정부는 통신분야에 진출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최소 등록 자본 규정, 지분 비율 등 제한을 두고 있음.
- 2001년 4월까지 중국내 외국계 금융기구는 178개에 달함. 그중 외국독자은행은 6개, 합자은행 7개, 외국은행 지점 158개, 파인애플회사 5개, 투자은행 1개 등임.

- 2001년 9월말 외국계 은행의 자산 규모는 중국내 전체 은행 총자산의 2.5%를 차지하고 있으며, 2000년 외국계 은행의 외화 여신 규모는 전체 외화여신 총액의 23.8%, 외화 수신 규모는 전체 외화 수신 총액의 4.8%를 차지하고 있음.
- 보험 서비스의 경우, 1992년 이후 20개의 외국계 보험회사가 중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으며, 100여 개 외국계 외국계 보험회사가 200여개의 대표처를 개설하였음.

3. 향후 개방 전망

- WTO 가입이후 중국의 서비스 분야는 점차 시장 개방을 확대할 예정인데,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.
- 담배 유통시장 개방을 제외한 출판, 약품, 농약 등 대부분의 상품 유통분야에서 합자기업 설립이 가능하며, WTO 가입후 5년 후에는 모든 제한 규정이 폐지됨.
- 외국기업에 대한 프랜차이즈 방식의 유통업 진출 제한을 WTO 가입 3년내에 전면 폐지
- 또한 육로, 철로 운송 및 저장, 창고, 화물운송 대행서비스 등 합자기업 설립 제한 규정을 2007년까지 완전자유화 될 것임.
- 은행업 개방의 경우, WTO 가입 5년내에 人民幣 영업 지역제한을 전면 폐지하고, WTO 가입 2년후에는 외국계 금융기관의 중국기업 대상 인민폐 영업, 5년후에는 일반인 대상의 영업을 허가됨.
- 또한 외국계 금융기관의 설립 요건이 완화되는바, 구체적인 내용은 ▲설립 신청 1년전의 자산총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중국내 독자 은행 및 독자 재무공사 설립 허가, ▲설립 신청 1년전의 자산총액이 200억 달

러를 초과하는 외국 은행은 중국내 지점 설치 가능, ▲신청 1년전의 자산총액이 1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외국금융기관은 중외 합자 은행 및 합자 재무공사 설립인가, ▲중국내 영업기간이 3년이 지나고 동시에 신청전 2년간 연속 영업이익을 낸 외국 금융기관의 인민폐 업무 허용 등임.

- 보험사 설립, 지역 제한, 업무 범위 등 WTO 가입에 따른 보험 서비스 분야의 구체적인 개방 내용은 다음과 같음.

o 보험사 설립 제한 완화: ▲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계 생명보험사 이외의 보험사는 중국내 자회사 및 합자회사 설립 가능하며 외자 지분 51%로 확대, ▲2년 후에는 독자적인 자회사 설립 가능, ▲외국계 생명보험사는 WTO 가입과 동시에 합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나, 외자 지분 50% 초과 불가

o 지역제한 폐지: ▲WTO 가입과 동시에 上海, 廣州, 大連, 深圳, 佛山(광둥성) 등 지역 서비스 가능, ▲2년 후에는 北京, 成都, 重慶, 福州, 蘇州, 厦門, 寧波, 沈陽, 武漢, 天津 등 10개 도시지역 서비스 개방, ▲3년 후에는 서비스 지역 제한 완전 폐지

o 영업 범위 제한 완화: ▲생명보험사 이외의 보험사는 WTO 가입과 동시에 외국기업에 대한 재산보험, 책임보험, 신용보험 등 보험 영업, 2년 후에는 중국 및 외국 일반 고객에 대한 보험 영업 가능, ▲외국 생명보험사의 경우, 가입후 외국인 및 중국인 대상 생명보험 영업 가능, 3년후 외국인 및 내국인 대상 건강보험, 단체보험, 양로보험 및 연금보험 영업 가능, ▲외국 재보험사는 가입과 동시에 자회사, 합자, 독자 자회사 설립 등을 통해 생명 및 기타 보험의 재보험 영업 가능, 지역 및 수량 제한 등 폐지 (***)